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6.

발 의 자 : 안상훈 · 김성원 · 백종현
김 건 · 윤재옥 · 이만희
고동진 · 박덕흠 · 김은혜
이종배 · 박성훈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,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‘키즈카페’의 경우,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·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1항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9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(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위에 한정한다)

30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또는 아동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영업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영업소

제29조의4제3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제29조의3제1항제29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비영리법인

23. 제29조의3제1항제30호의 영업소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) ①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아동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	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) ① ----- -----

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28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⑦ (생략)

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

-----.

-.

1. ~ 28. (현행과 같음)

29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

제21조제4항에 따른 발달재활

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

제23조제2항에 따라 가족지원

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

(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

하는 직위에 한정한다)

30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

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

하는 자의 영업소 또는 아동

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

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

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

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영업소

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

하는 영업소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9조의4(취업제한명령을 선고

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
검·확인) ①·② (생략)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·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21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④ ~ ⑦ (생략)

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
검·확인) ①·② (현행과 같
음)

③

1. ~ 21. (현행과 같음)

22. 제29조의3제1항제29호의 발
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비
영리법인

23. 제29조의3제1항 제30호의 영
업소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